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5가합106699 판결 [구상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나207194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5가합106699 판결

전문

원고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전원엔지니어링

변론 종결 2017. 9. 20.

판결 선고 2017. 1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08,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11.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1,3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공사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승일토건과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준공기한: 2015. 1. 9., 계약금액: 995,797,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원도급계약에 따름'으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1차 공사 중단

피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노무비 등을 미지급하자 2014. 8. 1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원·피고는 2014. 9. 4.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 피고의 2014. 7. 투입분까지 미불 및 체불금액은 없다. 원고가 직영공사를 수행하기 전까지의 2014. 8. 투입비는 피고가 2014. 9. 15.까지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2차 변경계약 체결 및 피고의 3차 변경계약 체결 거절

- 1) 원고는 2014. 8. 27. 서울시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와 관련한

설계변경과 원고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 등을 반영하여 2014. 9. 27.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원·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11. 30.로 단축하였고(다만 포장, 철거공사는 2015. 5. 15.까지로 연장하였다), 공사대금을 712,987,00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서울시는 2014. 12. 16. 3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기존에 1차, 2차로 나뉘어 있던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통합하여 최종 준공기한을 2015. 5. 15.로 변경하였다(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기존 1차 원도급공사에 포함된 부분이었다).

3) 원고는 2014. 12. 3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3차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피고의 미지급 공사비 또는 기투입비용 합계 783,505,928원을 정산하기 전까지 변경계약 체결에 응할 수 없다'며 3차 변경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라. 2차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등

1) 피고는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2014. 12.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불내역을 제출받아 2015. 1. 16.부터 2015. 2. 17.까지 재하수급인들에게 합계 193,377,627원(= 2015. 1. 16.자 188,125,737원 + 2015. 1. 19.자 1,179,730원 + 2015. 2. 17.자 4,072,16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공사지연, 변경계약 거절, 재하수급인 체불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원·피고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2015. 4.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당시까지 원고가 일부 지급하고 남은 재하수급인 체불금 합계 291,325,420원을 원고가 229,322,840원(70%), 피고가 62,002,580원(2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1.~12. 재하수급인들에게 합계 229,322,84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941,35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대신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구상금 429,239,087원

이 사건 합의 전 지급한 193,377,627원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229,322,840원 + 관부속 자재비 1,056,000원 + 레미콘 초과사용비 5,482,620원 = 429,239,087원

② 지체상금 295,176,618원

약정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2015. 4. 17.까지 138일 × 지체상금률 0.3% × 계약금액 712,987,000원 = 295,176,618원

③ 하자보수비 52,372,000원

④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32,127,095원

계약 공사대금(미지급분 제외) 642,541,9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2,127,095원

⑤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증가된 공사비 202,884,000원

⑥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70,455,100원 공제

합계: 941,353,700원(= ①+②+③+④+⑤-⑥)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손실이 없도록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겠으니, 우선 피고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기성금을 초과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2014. 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오히려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요구하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정산 약속을 받고 나서야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금 외에는 정산을 약속한 초과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하수급인들의 독촉으로 결국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위 정산 약속이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과 지연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 지연과 이와 관련된 원고의 정산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이고,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부당하다.

3) 원고가 청구하는 하자보수비나,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증가 비용은 감정인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액 합계 268,919,300원으로 상계한다.

① 미지급 기성금 70,455,100원

② 하도급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26,064,000원

③ 돌관공사비 172,400,000원

합계: 268,919,300원(= ①+②+③)

3. 판단

가. 원고 주장 채권에 관하여

1) 재하수급인들에게 대신 지급한 노무비 등에 관한 구상금 가) 이 사건 합의 전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193,377,627원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2014. 9.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정산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229,322,840원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가 원·피고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원고가 재하수급들에 대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의 구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미지급한 재하수급인들의 노무비 등을 원·피고가 어떻게 나누어

지급할지만 정해져 있을 뿐, 원·피고 사이에서의 그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관계나 구상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계속되는 노무비 등 체불로 원고와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체불된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한 부분까지 부담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관부속 자재비, 레미콘 초과사용비 합계 6,538,620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관부속 자재 구매대금으로 1,056,000원, 레미콘 사용대금으로 5,482,6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레미콘 사용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17호증)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인 2015. 6. 9.에야 작성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전인 2015. 1. 26. 이미 위 레미콘 사용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음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구상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합계 429,239,087원(= 193,377,627원 + 229,322,840원 + 6,538,62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 가) 이 사건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사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4. 12. 30.경 최종 중단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5. 2. 9.경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과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재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역이나 그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계약특약 제1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재하수급금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였다.

② 피고가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노무비 등 체불로 이미 2014. 8. 1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공사 재개를 위해 일부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피고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재하수급인들이 원고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차 중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3차 변경에 따라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결국 3차 변경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④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선행 공정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후속 공정 진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나) 지체상금의 계산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등 참조).

원·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준공기한을 2014. 11. 30.로 정하되 포장, 철거공사는 2015. 5. 15.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포장, 철거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2015. 5. 15. 모두 완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포장, 철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토공사, 구조물공사, 우수공사, 상수도공사, 부대공사)만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차 중단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3차 변경계약 체결과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체불금 지급(또는 원고의 직접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 지급이 이루어지 전까지는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문(갑 제12호증의 2)을 보냈다. 앞서 본 공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3차 변경계약 거부 의사가 담긴 위 공문을 받은 2015. 1. 7.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갑 제2호증의 2) 및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무렵인 2015. 2. 4. 조사·작성한 잔여공사내역서(감정서 3권 14~15쪽)에 의하면, 포장, 철거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기성률은 별지 '피고 기성률 산정표' 기재와 같이 90.47% [= 기시공 금액(직접비) 440,724,940원 ÷ 계약 공사대금(직접비) 487,129,240원 × 100%]로 산정된다. 그리고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공사가 미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전체 공사기간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31일 [= 계약 공사기간 332일(2014. 1. 3.부터 2014. 11. 30.까지) × 9.53% (= 100% - 90.47%)]이 된다. 따라서 지체상금 종기는 2015. 2. 17.1) 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2015. 4. 17.을 지체상금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은 우수공사를 주 공정으로 보고 그중 5개 품목의 공정률을 평균 낸 다음(90%), 원고 제출 공정표(감정서 3권 51~52쪽)상 우수공사 기간(2014. 9. 1.부터 2014. 10. 12.까지 42일)에 비례하여 적용한 38일 (= 42일 × 90%)이 지난 2014. 10. 8.부터 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원고가 잔여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점을 2015. 4. 17.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부대공사 금액이 우수공사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② 감정인은 우수공사 가운데에서도 일부 품목만의 공정률 평균을 품목별 수량이나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였으며 포장, 철거공사를 제외하지도 않았다. ③ 또한, 원고의 공정표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준공기한과 부합하지 않는다(다만 위 공정표상 부대공사 완료일을 2014. 12. 15.로 예정한 부분은 감액요소로 고려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산정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지체일수는 79일(2014. 12. 1.부터 2015. 2. 17.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137,202,509원 (= 포장, 철거공사 제외한 계약 공사대금 578,913,544원2) × 79일 × 0.3%)이 된다.

다) 지체상금 감액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과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위 지체상금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중 30%인 41,160,752원(= 137,202,509원 × 30%)만을 인정한다.

①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대한 2차 변경계약 체결 후 원고가 작성한 공정계획 내 공정표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부대공사 부분의 완료일을 2014. 12. 15.로 예정하고 있어, 포장, 철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도 처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약정 공사기한인 2014. 11. 30.까지 완료되기 어렵다고 예상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인 2015. 5. 15.까지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서울시로부터 하자보수요청 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청구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했던 돌관공사비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아래 5)항에서 보는 추가비용으로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할 무렵 포장, 철거공사를 제외한 기성률이 90.47%에 이르는 등 이미 이행된 부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④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에게 서울시와 사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그전까지는 최소한의 기초 공사만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에 지연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절차가 늦어진 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하자보수비 가) 갑 제14,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실시공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순번 ⑦ 제외)와 같이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38,048,000원이 든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점부 기존 옹벽 벽면	322,000	322,000
②	집수정 및 빗물받이 시공위치 조정 및 미관처리	25,834,000	25,834,000
③	집수정, 빗물받이 위치 재조정	4,039,000	4,039,000
④	옹벽 G, H 철길 산책로에 침범한 콘크리트 구조물 철삭	86,000	86,000
⑤	새터언덕 토끼굴 옹벽 주변 정비	4,057,000	4,057,000
⑥	신설 옹벽 마감처리 불량	3,710,000	3,710,000

①	시점부 기존 옹벽 벽면	322,000	322,000
⑦	관로 하수관 준설	14,324,000	0
합계	52,372,000	38,048,000	

나) 원고는 위 표 순번 ⑦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14,324,000원도 구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관로 내 이물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위 표 순번 ①, ④, ⑤ 하자는 미관 등 개선을 위한 현장자문 과정에서 지적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사이므로 피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물과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현장자문 결과도 단순한 미관개선요청이 아닌 하자보수요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감정절차에서도 위 하자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집수정 덮개 미시공' 하자가 잔여공사비[아래 5)항]와 중복되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이를 인정하여 하자보수비 항목에서 제외하였고(감정서 1권 19쪽), 원고도 하자보수비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부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완료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는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2015. 5. 15.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잔여공사 수행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직영으로 또는 새로 하수급인을 투입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후 잔여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객관적 공사비는 202,884,000원으로 산정되고, 달리 위 감정금액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이 부분 손해액은 잔여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에 한정되므로, 별지 '피고 기성률 산정표'와 같이 피고가 잔여공사 12.69%(= 100% - 피고의 기성률3) 87.31%)를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90,478,050원(= 계약 공사대금 712,987,000원 × 12.69%)을 공제한 112,405,950원(= 202,884,000원 - 90,478,050원) 범위에서 이 부분 손해를 인정한다.

6) 소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620,853,789원(= 구상금 429,239,087원 + 지체상금 41,160,752원 + 하자보수비 38,048,000원 + 잔여공사 증가비용 112,405,950원)이 된다.

나. 피고 주장 채권에 관하여

1) 미지급 기성금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 70,455,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추가공사비 및 돌관공사비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추가공사나 돌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나 정산 과정에서 원고 측과 이 부분 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계 후 원고의 잔존 채권

피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 70,445,100원과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 620,853,789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550,408,689원(= 620,853,789원 - 70,445,100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50,408,68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8.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화석

판사고유강

판사김준우

별지

1) 해지할 수 있었던 날인 2014. 1. 7.부터 41일[= 후속 업체 선정 또는 직영공사를 위한 준비일 10일(감정서 1권 33쪽, 원고가 이미 일부 직영공사를 하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10일로 인정) + 잔여공사 필요기간 31일]이 지난날

2) 전체 계약 공사대금 712,987,000원 × (포장, 철거공사 제외 직접비 487,129,240원 ÷ 전체 공사대금 직접비 599,945,914원)

3) 앞서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와는 달리 포장, 철거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전체에 관한 피고 시공부분의 기성률이다.